

## (사) 한국조경학회 우수논문상 등에 관한 규정

1994년 3월 26일 제정  
1998년 3월 21일 개정

2004년 3월 27일 개정  
2010년 3월 26일 개정  
2011년 10월 28일 개정

### 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조경분야의 연구와 저술 및 번역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, 우수저술상 및 우수번역상 시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정의)

1. “우수논문상” 이라 함은 한국조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그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.
2. “우수저술상” 이라 함은 한국조경학회 회원이 저술한 학술서적 중 그 내용이 우수한 저술물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.
3. “우수번역상” 이라 함은 한국조경학회 회원이 번역한 학술서적 중 그 내용이 우수한 번역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.

### 제 2장 수상자의 자격

제 3조 (시상시기 및 심사대상) 수상은 매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우수논문상은 전(前)년도 한국조경학회지에 수록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, 우수저술상 및 우수번역상은 전(前)년도에 간행된 전문 저술물 및 번역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4조 (자격) 수상자는 한국조경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한 자이어야 하며, 우수저술상 및 우수번역상의 경우 학회에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해당 실적물 5부 이상 제출한 자에 한 한다.

### 제 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

제 5조 (수상 후보자의 추천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논문상의 경우 해당년도에 발간된 대상논문 중 5편 이상을 선정하며, 우수저술상 및 우수번역상의 경우에는 대상 저술물 및 번역물 중 3편 내외를 선정하여 추천서와 해당 실적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
## 제 4장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

제 6조 (심사위원회 설치) 우수논문상, 우수저술상 및 우수번역상 수상자를 심사, 선정하기 위해 우수논문상, 우수저술상 및 우수번역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 7조 (심사위원회 구성)

1. 심사위원회는 회장, 편집위원장, 각 연구위원회의 회장과 기타 회장이 선임한 회원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2. 심사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.
3. 심사 대상년도 조경학회지에 논문이 수록된 자와 심사대상 저술물 및 번역물의 저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

제 8조 (심사위원회 운영)

1. 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, 추천된 논문, 저술물 및 번역물을 심사하되, 심사기준은 당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한다.
2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, 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, 최고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.
4.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.
5.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.
6. 심사위원회는 해당년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산된다.

## 제 5장 시 상

제 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상한다.

제10조 수상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.

## 부 칙

1.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위원 이외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3.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